

# 2022 은빛초등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년도 단위로 운영한다.
2. 본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한다.  
※ 단,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57일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3. 운영 단위 규정은 1일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4.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는 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5. 학교는 신청서 검토와 학교장(전결규정 포함)의 결재를 통해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 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6.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학교장 내부결재 필요)
7.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 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8.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
9.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원본 보관한다.  
※ 교외체험학습 출석 처리 방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 해설

※ 근거: 각급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 기준

10. 본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활동 허가·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견학 활동,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기타 체험 활동으로 한다. 단, 보호자가 신청하더라도 위험성이 높은 체험학습, 상업적 체험학습, 종교 활동 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1.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12. 원격수업 중에 교외체험학습은 가능하지만, 가정학습(학교장허가)은 허가 불가능하다.
13. 본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

단 계	주 체	내 용	비 고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보호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식1>을 ( 3 )일전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교사에게 사전 요청을 하거나 하이클래스앱 학교양식신청서 탭에서 신청할 수 있음.)	홈페이지 탑재
신청서 결재	학교	학년부장 전결	
허가 여부 통보	담임교사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호자에게 체험학습 허가 통보서를 서면(또는 문자)으로 통보	
현장체험 학습 실시	인솔자 및 학생	목적에 맞는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학생 및 보호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서식 2>제출 종료 후 ( 5 )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되어 있으며 하이클래스앱 학교양식신청서 탭에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보고서 제출 쪽수는 ( 1 )쪽 이상 ( 5 )쪽 이하이며 활동내용을 씀.	홈페이지 탑재
출결처리 및 사후 관리	학교	체험학습 종료 후 ( 5 )일 이내 제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련 서류 보관	당해 학년도

※ 위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험학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